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22일, 서천호 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4.11.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천호 의원)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공간을 제공하거나 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나 어촌계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체인 전국 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도(道)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설립·운영 중으로 국가는 매년 해당 단체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여 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농어촌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및 매출액은

2020년~2021년까지 급감하였다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하에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체험관광 프로그램의 기획, 적극적 홍보 및 마케팅, 우수 체험관광 사례의 공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역량 교육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실제 농어촌 현장에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자주적 협동체인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전국단위 1개소, 道단위 9개소 설립·운영 중)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예산편성을 통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와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각각 보조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법에 비용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와 달리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경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지속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측면이 있어왔고, 2024년 협의회에 대한 지원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바 있음.

개정안은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안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침체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재정소요를 고려하여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